

kiri Weekly

2014.3.3 제273호

이슈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 영향

포커스

편드슈퍼마켓 도입과 금융상품 판매채널 진화 전망

글로벌 이슈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신흥국 진출 현황 및 전망

2013년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영성과 개선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보험계약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행시 영향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정인영 연구원

요약

- 법무부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보험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사위가 2012년에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된 4번의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하여 마련한 법률안으로 1991년 12월 상법 보험편 개정 이후 23년 만에 이루어진 개정임.
-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됨.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개정사항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 명시 및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임.
 - 보험환경 변화 반영을 위한 개정사항은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 신설 등임.
 - 끝으로 장애인과 유족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다수 수익자 존재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범위 명확화, 피보험자의 생계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을 신설함.
-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상품 개발, 판매방식, 언더라이팅을 비롯한 계약관리,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경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사전적으로 각 부문별로 해당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신규 보험상품 개발시 변경된 계약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제고를 위한 언더라이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판매채널의 경우 변경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및 새로 신설된 권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매뉴얼 변경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법무부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한 상법 보험편(이하 “보험계약법”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임.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법(1962년 1월 20일에 상법 제4편 보험편에 최초 규정)은 보험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과정을 겪어옴.
 - 보험계약법은 1991년 12월 상법 보험편이 개정된 이후 23년 만에 개정됨.
 - 이번 개정은 국회법사위가 2012년에 의원발의 형태로 발의된 4번의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¹⁾을 통합하여 마련한 법률안임.

-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환경의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첫째,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함.
 - 둘째,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함.
 - 셋째,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함.

- 본고에서는 내년에 시행될 보험계약법의 개정내용이 보험상품개발, 언더라이팅을 비롯한 계약관리,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보험경영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보고, 향후 시행에 대비해 준비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1) 2012년 5월 30일 김정록 의원 대표발의안, 2012년 7월 4일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안, 2012년 8월 30일 배기운 의원 대표발의안, 2013년 2월 5일 정부안.

2. 보험회사 공통적용 개정내용



가. 보험자의 약관설명 의무 도입 및 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

- 현행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유무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복잡한 보험상품구조와 보험약관 내용을 파악하여 계약의 취소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에도 그 기간이 짧아 취소권을 행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²⁾
-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교부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 취소권 행사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음(상법 제638조의3).
 - 향후 보험회사는 증권교부의무에 추가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약관설명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설명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취소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완전판매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규정 신설

- 보험계약법이나 보험업법에서 보험대리상 등에 대한 권한 등이 불분명한 것을 보험대리상 등에 대한 권한을 계약법에 처음으로 도입하였음.
 - 현행법에는 보험대리상 등 보험자의 보조자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가 이들에게 행사한 청약 등의 의사표시나 이들에게 교부한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개정안은 보험대리상³⁾에게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

2)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21.

수령권을 부여하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⁴⁾에게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함(상법 제646조의2 신설).

■ 위 규정은 보험자 보조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험자와 보험대리상 간의 권한에 관한 내부적 제한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즉,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다. 소멸시효의 연장

■ 개정안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소멸시효를 모두 1년 연장하였음.

- 먼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음(상법 제662조).
- 현행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외국의 입법례⁵⁾ 등에 비추어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 등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의 이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3) 법무부는 18대 개정안에서는 ‘보험대리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상의 ‘보험대리점’은 계약대리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계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그것과 범위가 다름. 이에 「상법」 상행위편에 ‘대리상’ 규정이 존재하므로 ‘보험대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24.

4) 실무에서는 이른바 ‘보험설계사’ 또는 ‘생활설계사’ 등으로 불리고 있음.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25.

5) 독일의 경우 구 보험계약법 제1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법(BGB) 제195조의 일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종래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법으로 분리하면서 3년으로 연장함(일본 보험법 제95조). (법무부 제공,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36.

으로 기대됨.⁶⁾

-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권 행사기간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품담보위험과 면책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준비금의 적립규모와 적립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임.

라. 질병보험 규정 신설

■ 최근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질병보험 등 제3보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보험계약법에 규정된 상해보험에 추가하여 질병보험을 신규로 규정하고 인보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상법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 현행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 그 법적 규율에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질병보험을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나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함.

■ 동 개정안은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법적 분쟁⁷⁾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는 「상법」에는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 제4조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외에 제3보험업의 하나로 질병보험⁸⁾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상법」의 보험통칙·인보험·상해보험에 관한 규정과 보험약관 그리고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⁹⁾

6)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37.

7) 최근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본인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공보험인 의료보험 외에 보험회사가 개발한 다양한 질병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8) 질병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상해 이외에 입원·수술 등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 건강의 손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인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례임.

9)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66.

3. 손해보험회사 관련 개정 내용



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의 신설

- 개정안은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상법 제682조).
 - 현행법은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고의가 아닌 사고일지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¹⁰⁾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보험수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역선택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제3자가 개입된 보험사고도 담보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언더라이팅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나.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 개정안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사실의 보험회사에게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되,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배상청구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함(상법 제722조).
 - 현행법은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10) 대법원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피보험자에 의해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행하여진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음.

- 위 규정은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이익과 보험자의 이익 간에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해석상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청구 사실 통지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한 것은 손해부담의 형평상 타당한 내용으로 이해됨.¹¹⁾
 - 또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법 제657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보험사고발생 통지를 이행한 경우에는 책임보험규정인 제722조에 따른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책임부담의 형평상 이해됨.¹²⁾

다.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

- 개정안은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자의 책임, 보험편 규정 중 보증보험의 성질상 적용이 부적절한 규정의 적용 배제 및 「민법」 상 보증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둠(상법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신설).¹³⁾
 - 현행법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¹⁴⁾ 보증보험이 갖는 보증 및 보험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증보험의 성질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등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 보증보험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보증보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의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생명보험회사 관련 개정내용



가.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

- 개정안은 보험금의 분할지급이 인보험(人保險)의 공통적인 특질이라는 점에 착안해 인보험 통칙에 보

11)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46.

12) 사고발생통지로서 배상청구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가혹할 수 있음.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46.

13)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6(적용 제외), 제726조의7(준용규정).

14) 「상법」에는 보증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험업법」에서 손해보험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험금 분할지급의 근거 조항(상법 제727조 및 제730조)을 신설하였으며,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로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규정한 반면에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하였음(현행 상법 제735조 및 제735조 제2항).

- 이번 개정안은 보험금 분할지급이 사람의 사망, 생존,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인(人)보험과 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인보험 통칙(제1절) 내에 분할지급 조항을 신설함.
 -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은 보험계약관계라기 보다는 보험상품에 관한 것으로 보아 「상법」에서 모두 삭제하고,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 생존, 생사혼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이 보험금의 분할지급의 근거를 인보험 통칙으로 옮기면서 ‘연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분할지급되는 인보험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인구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나. 인지능력이 있는 일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 개정안은 심신박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함(상법 제732조 단서 신설).
- 현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¹⁵⁾ 또는 심신박약자¹⁶⁾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 이는 15세 미만자나 정신능력이 온전치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이나 보험범죄 등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즉, 이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한다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임.
 - 개정안은 인위적 사고 방지나 인권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이를 보완할 법적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봄.

15)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즉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자신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의사능력)이 없는 자

16)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 즉 정신장애의 정도가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는 아니나 통상인보다 불완전한 판단능력을 가지는 경우. ‘심신미약자’라고도 함.

- 경제활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를 보조하는 심신박약자가 생명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생명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역선택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상품개발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계약체결시에 차단되도록 언더라이팅 기능강화가 수반될 필요성이 있음.

다.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

- 개정안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음(상법 제732조 제2항).
- 현재에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의사고유발자를 제외한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위 규정은 보험수익자가 수인이고 그 중 일부의 고의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자의 책임 여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량한 유족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개정은 사고에 고의가 있는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고의사고와 관계 없는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것¹⁷⁾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할 때에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험보험료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시에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보험의 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라.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동의요건 도입

- 개정안은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신설하였음(상법 제735조의3제3항 신설).

17)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60.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이라도 보험수익자의 일부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여 살해하였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알지 못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단체보험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음.
- 단체보험에서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이익과 더불어 단체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은 종업원(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단체 자신이 보험수익자로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업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여 단체의 구성원 및 그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됨.¹⁸⁾

5. 시행에 대비한 준비관련 시사점



- 이번 개정안이 2015년에 시행되는 경우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부합한 업무내용을 분석하여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보험상품 개발측면에서 준비사항을 보면 기존의 상품 운영이나 개발에 근본적인 변화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적으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는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설명의무위반시 계약취소권 연장과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금지,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가입허용 등으로 인해 향후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담보위험과 보험가입금액, 역선택 등을 제한하기 위한 계약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63.

〈표 1〉 보험계약법 개정안 시행 대비 준비업무

구분	개정안 내용	개정 유형	보험회사의 준비사항				
			상품 개발	판매 업무	언더 라이팅	손해 사정	계약 관리
모든 보험 회사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 연장(제638조의3)	변경	◎	◎	-	-	◎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제646조의2)	신설	-	◎	-	-	◎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변경	-	-	-	-	◎
	질병보험 규정 신설(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	신설	-	-	-	-	-
손해 보험 회사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제682조)	신설	◎	-	-	◎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제722조)	변경 신설	-	-	-	◎	◎
	보증보험 규정(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	신설	-	-	-	-	-
생명 보험 회사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 사고 구체화(제727조 및 제730조, 현행 제735조 및 제735조의2 삭제)	변경	-	-	-	-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제732조 단서 신설)	변경 신설	◎	◎	◎	◎	◎
	다수수익자계약의 보험자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변경 신설	-	-	◎	◎	◎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제735조의3제3항)	신설	-	◎	◎	-	◎

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는 준비가 필요함을, “-”는 준비와 관계없음을 의미함.

- 계약자의 취소기간 연장 및 대리상의 권한 등, 단체보험의 여건 명확화 등에 대해 판매채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보험약관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판매채널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대부분 정액형보험인 관계로 사고발생사실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언더라이팅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향후 심신박약자의 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계약의 보험자 면책,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로 인해 언더라이팅이 강화가 필요함.
- 개정된 계약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매뉴얼을 변경하고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kiri](#)